제기동역 아이파크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957-341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 발표일(25.08.13.)로부터 1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7.25.(금)	25.09.12.(금)	25.09.17.(수)	25.09.22.(월)	25.09.25.(목)	25.09.27.(토)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12.(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175 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25.(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270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059.9200B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9.17.(수)**	**25.09.22.(월)**	**25.09.25.(목)**	**25.09.27.(토)**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08.13.)**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2층 2개동 총 351세대 중 일반분양 82세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1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수
2025910175	01	059.9200B	59B	1	102	1403
	합 계			1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원]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시	30일내	2025.12.15	2026.05.15	2026.10.15	2027.03.15	2027.08.15	2028.01.15	
59B	1	102동 3호	14층	1	720,860,690	347,239,310	1,068,100,000	30,000,000	76,810,000	106,810,000	106,810,000	106,810,000	106,810,000	106,810,000	106,810,000	320,43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5.11.25	입주지정일
59B	19,800,000	1,980,000	1,980,000	15,840,000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5.07.2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세부 품목 및 납부일정 등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5.07.2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9.22.(월) ~ 2025.10.01.(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9.22.(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서류제출 일정	■ **2025.09.25.(목)** 10:00~17:00
제출장소	■ 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번지)
유의사항	■ 추후 서류 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온라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청약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용 ※ 온라인 발급용 전자인감증명서 제출 시 제출처는 '제기동역 아이파크'로 기재
	O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표기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하여 제출) -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입증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O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표기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하여 제출) -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O	주민등록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O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당첨자/대리인	■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O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당첨자 계약 체결

계약 일정	■ **2025.09.27.(토)** 10:00~17:00
계약 장소	■ 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번지)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서류유형</th><th rowspan="2">해당서류</th><th rowspan="2">발급기준</th><th rowspan="2">제출대상 및 유의사항</th></tr>
<tr><th>필수</th><th>추가
(해당자)</th></tr>
<tr><td rowspan="10">본인
계약시</td><td>O</td><td></td><td>계약금 입금증</td><td rowspan="10">본인</td><td>■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핸드폰 이체 화면 캡쳐본</td></tr>
<tr><td>O</td><td></td><td>신분증</td><td>■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td></tr>
<tr><td>O</td><td></td><td>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td><td>■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온라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td></tr>
<tr><td>O</td><td></td><td>인감도장</td><td>■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td></tr>
<tr><td>O</td><td></td><td>인지세 납부 증명서</td><td>■「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1) 아파트공급대금에따른전자수입인지금액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아파트 공급대금 사업주체와 50%씩 균등 부담
기재금액 / 10억원 초과
구매 금액 / 35만원
매도인 부담액 / 17만5천원
매수인 부담액 / 17만5천원

(2) 발코니공급대금에따른전자수입인지금액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100% 각각 부담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구매 금액 / 2만원
매도인 부담액 / 2만원
매수인 부담액 / 2만원
■ '인지세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td></tr>
<tr><td></td><td>O</td><td>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td><td>■ 견본주택 비치</td></tr>
<tr><td>O</td><td></td><td>부동산 실거래 신고서</td><td>■ 견본주택 비치</td></tr>
<tr><td rowspan="3">대리인
신청시</td><td>O</td><td></td><td>인감증명서, 인감도장</td><td rowspan="2">본인</td><td>■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td></tr>
<tr><td>O</td><td></td><td>위임장</td><td>■ 견본주택 비치</td></tr>
<tr><td>O</td><td></td><td>신분증, 도장</td><td>대리인</td><td>■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td></tr>
</table>

※ 상기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 기관	납부 계좌	예금주
계약금,중도금,잔금	하나은행	591-910070-444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중도금,잔금)	하나은행	591-910070-438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예정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정확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6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본 무순위 입주자고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구분	내용
부동산개발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하나자산신탁, 214-86-34082
부동산개발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내용	2021-동대문구-재건축시행인가-1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	소재지 · 지번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 지목 : 대 9,632.70㎡ 건축용도 : 공동주택(3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착공일, 준공예정일	2025년 03월 31일 착공 / 2028년 06월 30일 사용검사(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대지소유권 100% 확보
판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등)	잔금 완납 후 공유지분 등기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루트이앤씨
분양대금관리	㈜하나자산신탁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신탁회사: ㈜하나자산신탁 / 분양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사업시행자(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시공회사
상호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제기1 재건축)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6740008

※ 위탁자 :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형 신탁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인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이하 "제기1 토지등소유자"), 수탁자이자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 간 체결한 사업시행형 토지신탁계약(정비사업)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한다.
- 본 공급계약에서 수탁자이자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

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제기1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 본 공급물건은「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인 "제기1 토지등소유자"가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인 "제기1 토지등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수탁자이자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아닌 자와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위탁자인 "제기1 토지등소유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 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위탁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홈페이지 http://jegidongstation-ipark.com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번지**

■ **분양 문의 : 02-957-3411**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